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국회 토론회

실효성 있는 도서관등록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19. 7. 26.(금), 14:0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 최 : 국회의원 도종환, 한국도서관협회
- 주 관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국회 토론회

■ 토론회 개요

- 토론회명 : 실효성 있는 도서관등록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장소 : 2019. 7. 26.(금), 14:00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 최 : 국회의원 도종환, 한국도서관협회
- 주 관 : 한국도서관협회

■ 진행 순서(안)

사회: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시 간		내 용
14:00~14:15	15'	✓ 인사말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축하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신기남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 허용범 국회도서관 관장 • 남영준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14:15~14:45	30'	✓ [발제 1] 입법학상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분석 •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2]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른 종류별 도서관의 역할 • 송기호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14:45~15:35	50'	✓ [지정토론] (좌장: 송승섭 교수) • (정부) 하부용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단장 • (공공) 이용훈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 (작은) 박소희 사단법인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 (대학/학교) 한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 (전문/특수) 송승섭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5:35~15:55	20'	✓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15:55~16:00	5'	✓ 마무리 및 폐회

인사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입니다.

‘실효성 있는 도서관등록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준비해주신 한국도서관협회와 발제를 맡아주신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송기호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 도서관을 대표해 참석해주신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박소희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한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송승섭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님과 오늘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주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님, 허용범 국회도서관장님, 남영준 (사)한국도서관협회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도서관법」은 1963년 제정 이후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과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서관이 기능과 주제별로 분화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적과 기대치가 달라지면서 현행법의 한계와 더불어 전반적인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 도서관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도서관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각 종류별 도서관 현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등록제라는 큰 틀의 방향 속에서 세부적인 보완책을 포함한 심도 깊은 논의와 발전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향후 전부개정안 논의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도종환

축 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국회에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서관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도종환 의원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우리 생활 속에는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2만여 곳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시대 등 변혁의 시기를 맞아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기본 이념에서는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등록제를 통해 운영 인력을 갖추지 못한 도서관의 신설을 방지하는 등 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이 한국 도서관 발전의 신호탄이었다면, 2017년 발의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은 새로운 시대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의 질적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지역 간 편차, 운영 부처의 다원화 등 현재의 도서관 정책 환경의 문제를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도서관 등록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통과 전후 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계기로 도서관이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관으로 진화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축 사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신기남입니다.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시고 국회 토론회를 마련하여주신 도종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토론회를 준비하여 주신 한국도서관협회 남영준 회장님과 임직원분들, 토론회에서 발제와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허용범 국회도서관장님, 그리고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 도서관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도서관은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세분화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요를 생활 권역에서 충족시키기 위해 도서관은 양적·질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은 고도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21세기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법은 지난 56년 동안 수차례 개정되어 도서관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습니다. 이번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은 시대 변화의 조류 속에서 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민이 보편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도서관법 개정 TF를 구성하여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각 부 도서관 정책담당자와 도서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저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 TF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범위를 확장해서 도서관인들과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도서관등록제는 도서관법 TF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서관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도서관 등록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저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도서관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충실히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신 기 남

축 사



존경하는 도종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오늘 저희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1963년 도서관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래로 56년이 흘렀지만,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은 여전히 과소평가되거나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도서관 서비스 환경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재작년에 도종환 의원께서 스무 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즉,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이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문화선진국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꼭 이뤄지기를 바라며 저희 나름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 도서관의 기능과 서비스에서도 전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의 새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서관계 내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서관은 올해 기존의 학술정보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률정보 및 의회정보 협력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회도서관이 가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개방·협력할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디지털화된 정보의 수집·서비스가 날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감에 따라, 이러한 상호협력의 토대를 기반으로 공동의 디지털플랫폼 마련 등 도서관 서비스의 획기적 발전을 모색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이 담고 있는 취지와 방향대로,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모색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해답을 찾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도서관 관장 허용범

축 사



존경하는 도서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실효성 있는 도서관등록제’라는 주제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정책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도종환 국회의원님과 우리 도서관계를 진심으로 아끼시는 박양우 장관님, 도서관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기남 위원장님, 멋진 축사와 토론회 자리를 흔쾌히 제공해주신 허용범 국회도서관장님을 비롯해 이 행사를 준비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대 사회는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로봇기술, 모바일 등 ICBRM이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도한 물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이러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4차산업혁명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서관의 끊임없는 노력들이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로 일찍이 선언하였던 랑가나단의 주장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문인으로서의 사서 충원과 재정적 투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뒷받침을 정책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도종환 의원께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신 것도 우리나라 도서관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추진체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법은 정해지면 그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강제적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법이 제정 혹은 개정되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많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제·개정은 가능한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형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도서관계가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의 정책토론회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도서관 등록제’ 토론회를 통해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공감대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으신 김종천 연구위원님과 송기호 교수님, 토론을 맡으신 하부용 단장님과 이용훈 총장님, 박소희 이사장님, 한혜영 박사님, 송승섭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도서관을 지켜주시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든 도서관인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남 영 준

목 차

■ 인사말	2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축 사	4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기남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허용범 국회도서관 관장	
남영준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 발제 1 ■	15
입법학상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분석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2 ■	31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른 종류별 도서관의 역할	
송기호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 지정토론 ■	51
하부용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단장	
이용훈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박소희 사단법인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한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송승섭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입법학상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분석

김 종 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입법학상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분석

1. 『도서관법』의 전부 개정(안) 필요성

- 현행 도서관 관계 법령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후,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개정하게 되었고, 2007년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법화를 하게 되어 「도서관법」이 현재 도서관에 관한 통합·기본법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음
- 이처럼 2007년 4월 5일 법률 제8029호로 개정된 입법목적은 “도서관이 국가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자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학습공간이 되고 지식정보 활용능력의 제고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의 장으로 기능할 것이 요구되는 등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며, 도서관을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었음
- 최근 종류별 도서관 정책 환경이 세분화·전문화되면서,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 2015년 「대학도서관진흥법」이 별도 법률로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관계 법령이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현행법의 체계를 통하여 도서관의 사회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가치 실현을 도모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도종환 의원에 의하여 대표 발의된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사회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도서관이 적합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 정비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음

2. 도종환 의원에 발의된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2.1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의 입법체계

현행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신설〉	제2조(기본이념)
제2조(정의)	제3조(정의)
〈신설〉	제4조(도서관의 구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6조(도서관의 책무)
제7조(도서관의 협력 등)	제7조(도서관의 협력 등)
제3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0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3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신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3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재원의 조달)	제15조(재원의 조달)
제24조(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제16조(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제17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8조(설치 등)	제18조(설치 등)
제19조(업무)	제19조(업무)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0조의2(온라인자료의 수집)	제21조(온라인자료의 수집)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제22조(국제표준자료번호)
	제4장 공공도서관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제22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제23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제23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제24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제2절 공공도서관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제28조(공공도서관의 업무)	제28조(공공도서관의 업무)
제29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29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현행	전부개정안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제5장 대학·학교도서관 및 전문·특수도서관
제34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제32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제37조, 제38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제33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제40조(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34조(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6장 등록 및 절차
제31조(등록 등)	제35조(등록 등)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제7장 도서관 인력·시설 등
〈신설〉	제37조(도서관의 날)
제5조, 제6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제38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제8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제39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제9조(금전 등의 기부)	제40조(금전 등의 기부)
	제8장 보칙
〈신설〉	제41조(시정명령)
제33조(사용료)	제42조(사용료)
〈신설〉	제43조(보고)
제31조의3(청문)	제44조(청문)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신설〉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장 벌칙
제47조(과태료)	제47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국·공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2.2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기본이념

- 「도서관법」 개정안 제2조는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서관의 사회적인 가치 확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성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적인 가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규정임

② 도서관의 구분

- 「도서관법」 개정안 제4조제1항은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i)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ii)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iii)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과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현행 정의규정에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 도서관 등으로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 구분하고 있던 것을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도서관, 공립 도서관,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점에서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제 현행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 적용하는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③ 도서관의 등록 규정

- 「도서관법」 개정안 제35조제1항은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제35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5항에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현행 「도서관법」 제31조와 제31조의2에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에 대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국립 도서관 및 공립 도서관에 대하여는 등록에 관한 의무를 지우지 않았음

- 따라서 「도서관법」 개정(안)은 사립 도서관에 대하여만 등록규정을 두고 있던 것을 국립 도서관, 공립 도서관에 까지 확대하여 등록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러한 도서관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시설, 장서 및 사서 등을 갖추어 등록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의 제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확산이라는 공적인 가치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판단됨

④ 도서관의 날

- 「도서관법」 개정안 제37조제1항에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일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과 동조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도서관법」 개정(안)은 “도서관의 날”을 명시적으로 법정 기념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도서관에 관한 국민들의 사회적인 인식과 이해를 제고함과 더불어 도서관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⑤ 국·공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 「도서관법」 개정(안) 부칙제2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국·공립 도서관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7.9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다만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국·공립 도서관은 3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운영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입법학상 “경과조치”란 신·구 법률 사이에서 법적인 변화와 법적인 안정성의 요구를 조화시키면서 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도서관법」 개정(안)은, 종전에 사립 도서관에만 적용되는 등록을 국립 도서관 및 공립 도서관에도 적용하는 바, 이는 이미 시행당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있는 국·공립 도서관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시행당시 등록 요건을 미충족한 도서관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입법례를 두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도서관법』 TF 개정(안) 주요 검토의견

3.1 『도서관법』 TF 개정(안)의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법 전부개정안(5477)	도서관법 TF 개정(안)	비 고
② 도서관의 종류는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된다. 가. 제23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 나. <u>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u> 다. 어린이, 여성,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신 설>	② 도서관의 종류는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제23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 나. <u>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u> 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라. <u>지역별·분야별 콘텐츠를 개발 및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공중의</u>	작은도서관법* 제1조(목적),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 방향) 참조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2 중 작은 도서관의 시설·자료·사서배치 기준을 작은도서관 법령으로 이동 필요 특수도서관 중 장애인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하고, 여성을 삭제 *개정안은 지식정보 취약계층(도서관법시행령제21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공공도서관에 포함, 다만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도서관은 누락/ 여성의 경우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지식정보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농어촌 등 *(참조법령)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다문화가족법, 청소년복지법, 농어촌복지법 특화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 *신동근(민) 발의(19.5.10)/문체위

도서관법 전부개정안(5477)	도서관법 TF 개정(안)	비 고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u>교직원과 학생</u>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u>교직원과 학생</u>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설립기관·단체의 <u>소속 직원 또는 공중</u>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나. 의료기관 임원자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다. 육군, 해군, 공군 등	<u>특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화도서관</u>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u>교원 및 학생, 직원</u>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u>교원 및 학생, 직원</u>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설립기관·단체가 <u>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u>,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u><삭 제></u> 가. 의료기관의 임원자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나. 육군, 해군, 공군 등	회부('19.5.14) 장애인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안 제4조 제2항 다목 참조)

도서관법 전부개정안(5477)	도서관법 TF 개정(안)	비 고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u>라. 교도소·보호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u> <u><신 설></u>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u>다. 교도소·보호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u> <u>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TF의견) 도서관법에서 전문도서관 조항은 일부이지만,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전문도서관의 개념정립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개정안) 전문도서관의 세부종류와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u><시행령(안) 예시 > :</u> 현장 의견수렴 필요 제0조(전문도서관의 종류) 「도서관법」 제0조제0항에 따른 전문도서관의 세부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도서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설치·운영하는 도서관 2. 연구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설치·운영하는 도서관 3. (계속)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등 서비스 대상과 범위가 일부 공공도서관과 유사한 점을 감안, 전문 인력·시설·자료 등 전문도서관만의 차별성** 있는 등록 기준 마련 필요

도서관법 전부개정안(5477)	도서관법 TF 개정(안)	비 고
		*현행 도서관 법령에 전문 도서관의 기준은 없으나,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경우 시설·자료·사서 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중앙행정기관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설립·운영 하는 국립 공공도서관과 국립 전문도서관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2 『도서관법』 TF 개정(안)의 국립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등 신설

도서관법 전부개정안(5477)	도서관법 TF 개정(안)	비 고
<신 설>	제27조의2(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등을 규정* *손혜원(무) 발의('18.11.16)/문체위 회부('18.11.19)
<신 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기준과 연계, 사전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하위법령* 병행 마련 필요 *특히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부지 및 시설명세 등이 도서관 등록기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주요내용) 건립사업의 사전법적 절차(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부지 확보, 지방 의회보고(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사전 요인을 점검 후 타당성 여부 판단 (기대효과) 선 시설건립, 후 운영방안 마련과 같은 방식을 탈피함으로써 향후 시설 리모델링 등 추가 예산 소요 방지, 도서관

도서관법 전부개정안(5477)	도서관법 TF 개정(안)	비 고
		서비스 수준 제고, 운영비 절감 효과 예상(건립 타당성 평가 대상 도서관은 향후 공공도서관 운영 컨설팅 사업을 통해 지속적 관리 추진)

3.3 『도서관법』 TF 개정(안)의 등록 및 절차

도서관법 전부개정안(5477)	도서관법 TF 개정(안)	비 고
제35조(등록 등) ①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등록 등) ①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u>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u>	교육청 소속 공립 도서관은 관할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고, 사립 도서관의 경우 임의규정*(등록 할 수 있다)으로 수정 *박물관·문화관·과학관 등 타 문화시설법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u>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u>	변경등록은 안 제35조제2항 후단으로 이동 경미한 사항의 변경등록은 제외 필요

도서관법 전부개정안(5477)	도서관법 TF 개정(안)	비 고
<u><신 설></u>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휴관 또는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F의견) 공공도서관(광역대표 도서관·작은도서관 등 포함), 장애인도서관 이외 등록제 반대 (사유) (1)현실적으로 등록제 효과성이 미비한 일정 규모 이하의 도서관, (2)소속 직원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3)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국회도서관·법원도서관·인권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설치된 도서관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판단 등 (개선안)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도서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일정기간 이하 휴관의 경우, 변경등록으로 조치 가능(폐관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간·사유 등 포함 변경등록에 반영)

도서관법 전부개정안(5477)	도서관법 TF 개정(안)	비 고
<신 설>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5조제1항의 단서에 따	제35조의2(도서관의 운영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록	등록된 도서관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예산 지원 및 포상 등을 규정 도서관 등록 후 학원(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등록의 취소 규정 마련 필요(지자체 건의 등) 안 제2호를 제3호로 이동

도서관법 전부개정안(5477)	도서관법 TF 개정(안)	비 고
<u>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u>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신 설> ② 제1항의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3. 제35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발전을 저해한다는 국가도서관위원회 의견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3호를 제2호로 이동 안 제41조(시정명령) 조문이 안 제36조와 중복되어 통합, 제5항 신설

4. 소결

-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도서관의 사회적인 책임과 그 역할을 발전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서관의 사회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도서관이 적합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종환 의원에 의하여 2017년 2월에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이 대표발의하게 되었음
- 특히, 현행 「도서관법」 제31조와 제31조의2에서 사립도서관의 설립에 관한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국립도서관과 공립도서관에 대한 등록의무를 지우지 않던 것을 국·공립 도서관에 확대하여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장서 및 사서 등의 기준을 충족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담보함과 아울러 도서관의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의무”를 규정하게 되었음
- 입법학상 등록제도는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에 등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등록제도는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여 지기도 하지만 실정법에서는 등록제도가 허가제도와 신고제도의 중간에 속하는 사업 활동을 규제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특히, 등록의 경우에도 등록 요건, 결격 사유, 등록의 취소(말소라는 용어도 사용함) 및 사업 활동 정지,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처하는 것으로 볼 때 등록제도도 허가 제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등록제도가 허가제도에 비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의 폭이 다소 적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허가제도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겠음
- 따라서 등록제도의 경우에 행정청에 등록신청의 수리 또는 거부에 대한 재량의 여지를 두게 되면 허가제도와 같게 되어 양자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됨
- 그러므로 입법학상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식성 판단 등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등록기준을 구체적·일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요건의 구비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강학(학문)상의 개념	현행법상 개념
특허 (면허)	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	특허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면허하는 용어를 주로 사용함
허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	금지-해제의 관계가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등록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 기관에 갖추어둔 장부에 등재하고 그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인허가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음
신고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청에 알리는 것	신고에 따른 수리(受理)제도를 두어 완화된 허가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음

- 종국적으로 정부는 1963년도에 제정된 「도서관법」의 체제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광풍 속에서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로봇 공학, 사물의 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같은 기술적 진보가 지금의 도서관 사서 등의 일자리(현재 존재하는 일자리 35-50% 감소)를 로봇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도서관이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을 강화를 도모할 수 방향으로 현행 「도서관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음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른 종류별 도서관의 역할

송 기 호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른 종류별 도서관의 역할

1. 도서관의 가치와 『도서관법』의 필요성

도서관은 학교와 함께 지식이라는 사회제도를 이롭게 하기 위한 사회기관이다(Shera 1984, 53). 나아가 지능정보사회에서 물리적 공간을 갖춘 도서관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통해서 생애능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문화 기반 시설이다. 왜냐하면, 도서관 이용자는 자료 활용 과정에서 대상 세계와의 대화(세계 만들기), 타자와의 대화(친구 만들기), 자기 자신과의 대화(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사토 마나부 2011, 101) 사고의 틀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가치는 이용자와 이용자 집단의 요구와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1988년 개정되어 30년이 경과된 〈도서관의 사서배치 기준〉 등 종류별 도서관의 등록 요건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질 관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종류별 도서관법을 아우르는 모법(母法)으로서 시대 상황에 맞는 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설립 주체와 목적 그리고 이용 대상 등으로 다원화된 도서관 간 연계와 협력의 근거를 제공한다.

2.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종류별 도서관의 주요 의견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은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이 담고 있는 도서관등록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유관 부처 간 사전 협의와 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개정 특별전담반(TF)」을 운영(2019년 4월~6월)하였다. 특별전담반 활동을 토대로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종류별 도서관의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결과(부록 참조)를 수정 의견과 조문의 신설/삭제 의견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2.1 안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수정 의견

안 제4조(도서관의 구분)에 대한 주요 수정 의견은 작은도서관의 재정의, 장애인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 및 이와 연계하여 특수도서관에서 장애인도서관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을 교원, 학생, 직원으로 구체화하는 방안과 전문도서관의 서비스 대상 명료화 등이다.

② 신설 및 삭제 의견

안 제4조(도서관의 구분)에 대한 주요 신설 의견은 전문도서관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계류 중인 다른 법안과 병합하여 특화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다. 반면에 삭제 의견은 장애인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특수도서관의 범주에서 장애인도서관을 삭제하는 것이다(제34조(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3항 제1조도 연계 삭제).

〈표 1〉 제4조(도서관의 구분) 관련 검토 의견

수정 의견	신설/삭제 의견
▶ 작은도서관의 정의(제2항 제1호 나목) ▶ 장애인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 및 여성을 삭제 (제2항 제1호 다목) 및 특수도서관에서 장애인도서관 삭제 ▶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을 교직원과 학생에서 교원, 학생, 직원으로 구체화(제2항 제2호, 제3조) ▶ 전문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을 소속 직원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명료화(제2항 제4호)	▶ 특화도서관을 공공도서관에 포함(제2항 제1호 라목) (계류 법률안 병합/ 신동근(민) 발의('19.5.10)) ▶ 전문도서관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조항 신설(제3항) ▶ 특수도서관에서 장애인도서관 삭제(제2항 제5호 가목) ▶ 장애인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제34조(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3항 제1조 삭제

2.2 안 제8조(적용범위)

안 제8조(적용범위)와 관련한 수정의견은 적용범위에 지식센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물관·미술관·진흥법』 제5조(적용범위)를 참고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표 2〉 제8조(적용범위)관련 검토 의견

수정 의견	신설/삭제 의견
▶ 적용범위에 지식센터 추가 ▶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 추가	해당없음

2.3 안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안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와 관련한 신설 의견은 계류 중인 다른 법안(손혜원(무)대표발의('18.11.16))과 병합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타당성 평가 조항을 담는 것이다.

〈표 3〉 안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관련 검토 의견

수정 의견	신설/삭제 의견
해당 없음	▶ 제27조의2(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제1항) 및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제2항) 조항 신설 ▶ 제27조의3(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전평가를 받아야 하며(제1항) 및 사전평가의 절차·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제2항) 조항 신설

2.4 안 제35조(등록 등)

① 수정의견

안 제35조(등록 등)와 관련된 수정 의견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등록 기관을 시·도 교육감으로 하고, 이와 연계하여 시·도교육감을 등록증 발급 기관, 폐관 신고 기관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립도서관의 등록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도서관의 일정 기간 이하 휴관은 변경 등록으로 조치가 가능하므로 ‘휴관 또는 폐관하고자’를 ‘폐관하고자’로 수정하는 것이다.

② 신설 및 삭제 의견

안 제35조(등록 등)와 관련된 신설 의견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도서관에 대해서 등록 예외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등록제 효과성이 미비한 일정규모 이하의 도서관, 소속 직원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국회도서관·병원도서관·인권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설치된 도서관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판단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록된 도서관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예산지원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표 4〉 제35조(등록 등) 관련 검토 의견

수정 의견	신설/삭제 의견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등록 기관을 시·도교육감으로 하고, 사립도서관의 등록을 임의 규정으로 함(제1항) ▶ 제1항에 포함된 ‘등록변경’의 내용을 제2항 후단으로 이동함 ▶ 시·도교육감을 등록증 발급 기관, 폐관 신고 기관에 포함(제3항, 제4항) ▶ 도서관의 일정기간 이하 휴관은 변경 등록으로 조치가 가능하므로 ‘휴관 또는 폐관하고자’를 ‘폐관하고자’로 수정함(제4항)	▶ 단, 경미한 사항의 변경등록은 제외 필요(제2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도서관에 대한 등록 예외 규정 신설(제3항) ▶ 등록된 도서관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예산 지원 및 포상 등을 규정한 제35조의2(도서관의 운영 평가)신설

2.5 안 제36조(등록 취소 등) 관련

① 수정 의견

안 제36조(등록 취소 등)관련 수정 의견은 시·도교육감을 등록 취소 기관에 포함함하고, 등록 취소 사유에 도서관 등록 후 학원(영리목적) 운영을 추가하는 것이다.

② 신설 및 삭제 의견

안 제36조(등록 취소 등)관련 신설 및 삭제 의견은 안 제41조(시정명령) 조문을 안 제36조와 통합하고, 제36조 제1항에 제5조(5. 그 밖에 도서관발전을 저해한다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를 등록 취소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 제41조(시정명령)는 삭제하자는 것이다.

〈표 6〉 안 제36조(등록 취소 등) 검토 의견

수정 의견	신설/삭제 의견
▶ 시·도교육감을 등록 취소 기관에 포함함(제1항) ▶ 등록 취소 사유에 도서관 등록 후 학원(영리목적) 운영을 추가함(제1항 제1호)	▶ 안 제41조(시정명령) 조문이 안 제36조와 중복되어 통합하고, 제36조 제1항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5. 그 밖에 도서관발전을 저해한다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

2.6 안 제38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안 제38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에 대한 수정 의견은 도서관 자료 중, 온라인 자료도 폐관이 아닌 때라도 교환 및 이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류별 도서관의 운영기준을 도서관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법령(각급 행정기관의 훈령 및 예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서의 배치기준 및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표 6〉 안 제38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검토 의견

수정 의견	신설/삭제 의견
▶ 도서관 자료 중, 온라인 자료도 폐관이 아닌 경우 교환 및 이관이 가능하도록 함(제3항) ▶ 종류별 도서관의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한 내용 수정함(제4항) ▶ 다른 법령(각급 행정기관의 훈령 및 예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서의 배치기준 및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함(제4항)	해당 없음

2.7 안 제43조(보고)

① 수정 의견

안 제43조(보고) 관련 수정 의견은 시·도교육감을 보고 주체에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록도서관 현황(등록청은 다음해1월20일까지 문체부에 보고)의 공개방법 및 시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한(다음해 1월말까지)을 정하지 않는 것이다.

② 신설 및 삭제 의견

안 제43조(보고) 관련 삭제 의견은 도서관은 등록과 동시에 관할 등록청에 관리·운영현황 등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소관 도서관 현황 제출 요구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표 7〉 안 제43조(보고) 검토 의견

수정 의견	신설/삭제 의견
▶ 시·도교육감을 보고 주체에 포함함(제1항, 제3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등록도서관 현황 공개 방법 및 시기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고시하도록 한 내용'을 '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제4항)	▶ 도서관은 등록과 동시에 관할 등록청에 관리·운영현황 등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2항을 삭제함

2.8 제44조(청문)·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수정 의견

제44조(청문),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수정 의견은 시·도교육감을 청문 주체에 포함하고(제44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수정(제45조 ①항으로 함)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유사명칭 사용금지(제46조 관련)는 도서관 등록제 시행에 꼭 필요한 조항이므로 민간자율성 침해 등의 이유로 삭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신설 및 삭제 의견

신설 의견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45조 제2항 신설)는 조항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표 8〉 제44조(청문)·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검토 의견

수정 의견	신설/삭제 의견
▶ 시·도교육감을 청문 주체에 포함함(제44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수정함(제45조 ①항으로 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제46조)는 도서관등록제 시행에 꼭 필요한 조항이므로 민간자율성 침해 등의 이유로 삭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제45조 제2항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9 부칙

① 수정 의견

안의 부칙과 관련한 수정 의견은 제1조(시행일)와 관련하여, 제35조(등록 등)·제36조(등록의 취소 등)·제41조(시정명령)·제43조(보고)·제44조(청문)의 개정규정 중 도서관의 등록 등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부칙 제2조(국·공립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제3조(사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하는 것이다.

② 신설 및 삭제 의견

안의 부칙과 관련한 신설 의견은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부칙 제2조 신설)와 사립 도서관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 4조 신설)에 대한 것이다.

〈표 9〉 부칙 관련 검토 의견

수정 의견	신설/삭제 의견
▶ 제1조(시행일)와 관련하여, 제35조·제36조·제41조·제43조·제44조의 개정규정 중 도서관의 등록 등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 조항 추가 ▶ 부칙 제2조(국·공립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제3조(사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도서관이나 등록신청 중인 사립 도서관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로 수정	▶ 부칙 제2조 신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서관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부칙 제4조(사립 도서관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립 도서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설

3.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른 종류별 도서관의 역할

3.1 도서관 등록제에 대한 종류별 도서관의 고민

특별전담반의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각 조문별 검토 결과를 보면, 도서관 등록제와 관련된 안 제35조(등록 등), 안 제36조(등록 취소 등), 안 제38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안 제43조(보고) 등에 대해서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도서관은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설립·운영되는 도서관의 주무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는 행정 체계 다원화 때문이다. 그리고 종류별 도서관의 <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이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필수 부속시설로서 독립기관의 형태로 등록이 어렵고, 등록제 시행이 3년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2018년 현재 사서교사 등이 미배치된 6,442개(64%)의 국·공립 학교도서관이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밖에도 종류별 도서관별로 등록에 따른 기준 마련, 평가, 적용 범위 등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안고 있다.

3.2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른 종류별 도서관의 역할

①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전문도서관>은 시행령을 통해서 범주의 명료화 및 통계와 평가 연계, 대표전문도서관 지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병원도서관>은 명칭과 서비스 대상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즉 병원도서관의 정의에 서비스 대상자를 의료기관의 의료진·환자·보호자 등으로 확대하거나, <병원도서관>(의료진을 위하여 의과대학이나 병원에 설치하는 전문도서관)과 <환자도서관>(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정리가 요구된다. 그리고 <병영도서관>은 상이한 운영 실태를 고려한 등록요건 마련이 필요하다. <교정시설도서관>은 정보 접근권과 정보격차 해소 그리고 재범률 감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법무시설규칙> 정비가 필요하다.

②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은 등록에 필요한 합리적인 최소인력 산출 및 감소하고 있는 인구 수를 고려한 설립 주체별, 종류별 사서 정원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대표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목적과 정책 환경 등이 일반 공공도서관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차별성 있는 등록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등록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도서관 명칭의 변경 방지 방안(예: 도서관 평가와 지원 연계) 마련, 도서관이라는 브랜드 통일과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도서관 인증마크 도입 등에 대한 협의가 요구된다. <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명확한 개념 정립, 역할 강화를 위한 광역도서관서비스 위원회 참여,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최소 등록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③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대학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 설치된 대학 도서관을 종류(설립목적 및 대상 기준)에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모든 학교도서관에 최소 1명의 사서교사 등이 조속히 배치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사립학교도서관이 인력 배치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리더십

도서관 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종류별 도서관의 상황을 고려한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설립·운영 주체가 다양한 종류별 도서관의 특수한 서비스 환경과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고, 도서관과 사서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점을 조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조정과 통합적 기능이 중요하다. 특히 다른 법령에 의해 설립된 종류별 도서관의 등록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종류별 도서관의 소관 부처가 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봉사 대상에 맞는 〈시설·자료·사서배치 기준〉을 재정립하는데 필요한 국가 수준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서 등 도서관 운영 자원의 확충에 필요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 평가와 활성화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4 도서관 확장성을 위한 주무 부처와 전문단체의 역할

도서관 등록제가 새로운 도서관 설립을 규제하고,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도서관이 명칭 변경을 시도하는 등 확장성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과 등록 취소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하위 법령(도서관법시행령, 도서관법시행규칙)¹⁾ 개정안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도서관 신축은 물론 기존 건축물을 도서관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필요한 지원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의 운영평가는 물론 도서관의 날(안 제37조) 행사 등이 사서들의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 경쟁이 아니라, 사서직과 도서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준과 내용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고(안 제43조)는 기관의 정보 공개와 및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단위 도서관의 업무 경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도서관 전문단체는 〈국가도서관위원회〉, 종류별 도서관 전문 단체 등과 협력하여 종류별 도서관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참고자료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477).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2017. 2. 7.)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2019.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5477, 도종환) 관 련
도서관법 개정 TF 조문별 검토의견. 세종: 도서관정책기획단.
- 사토 마나부(佐藤 學). 2011.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찬영 옮김.
서울: 살림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 원주: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 Shera, Jesse. H. 1984. *Sociological Foundations of Librarianship*. 윤영 옮김.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 서울: 구미무역(주)출판부.

부록: 개정안 조문별 주요 검토 의견

구분	개정안 조문	검토 의견	이유
제4조(도서관의 구분) 제2항			
작은도서관 정의	1. 공공도서관 나. <u>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u>	1. 공공도서관 나. <u>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u>	『작은도서관법』*제1조(목적), 제6조(작은 도서관의 운영방향) 참조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2] 중 작은도서관의 시설·자료·사서배치기준을 작은도서관법령으로 이동 필요
공공도서관 범주	다. 어린이, 여성, 노인, 다문화 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특수도서관 중 장애인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하고, 여성을 삭제 *대표적인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대상 장애인도서관을 공공도서관에 포함하고, 여성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삭제함 *(지식정보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농어촌 등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에 정의 *(참조법령)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다문화가족법, 청소년복지법, 농어촌복지법 등
특화도서관	<신설>	라. <u>지역별·분야별 콘텐츠를 개발 및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공중의 특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화도서관</u>	특화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 *신동근(민) 발의('19.5.10)/문체위 회부 ('19.5.14)
서비스대상구체화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u>교직원과 학생</u> 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u>교원 및 학생, 직원</u> 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u>교직원과 학생</u> 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u>교원 및 학생, 직원</u> 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설립기관·단체의 <u>소속 직원 또는 공중</u> 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설립기관·단체가 <u>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u> 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구분	개정안 조문	검토 의견	이유
장애인도서관 범주 변경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나. 의료기관 입원자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다.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라. 교도소·보호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삭 제> 가. 의료기관의 입원자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나.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다. 교도소·보호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장애인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안 제4조 제2항 다목 참조)
전문도서관 개념 등 정립	<신설>	③ 제2항 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F의견) 전문도서관의 개념 정립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위해 세부 종류와 범위를 시행령 위임 < 시행령안 예시, 현장 의견수렴 필요 > 제0조(전문도서관의 종류) 「도서관법」 제0조제0항에 따른 전문도서관의 세부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도서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설치·운영하는 도서관 2. 연구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설치·운영하는 도서관 3. (계속) *특히,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등 서비스 대상과 범위가 일부 공공도서관과 유사한 점을 감안, 전문인력·시설·자료 등 전문도서관만의 차별성** 있는 등록 기준 마련 필요 *현행 도서관법령에 전문도서관의 기준은 없으나,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경우 시설·자료·사서 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중앙행정기관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설치·운영하는 국립 공공도서관과 국립 전문도서관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구분	개정안 조문	검토 의견	이유
제8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 <u>지식센터</u>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u>다른 법률에 따라</u> 등록된 시설은 제외한다.	(참조)『박물관미술관진흥법』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u>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u> 등록된 시설은 제외한다.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신설〉 도서관 설립 협의·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설〉	제27조의2(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①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등을 규정 *손혜원(무)발의('18.11.16)/문체위 회부('18.11.19)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기준과 연계, 사전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하위법령* 병행 마련 필요 *특히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부지 및 시설명세 등이 도서관 등록 기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주요내용) 건립사업의 사전 법적 절차(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부지확보, 지방의회보고(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등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사전 요인을 점검한 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기대효과) 선 시설건립, 후 운영방안 마련과 같은 방식을 탈피함으로써 향후 시설 리모델링 등 추가 예산 소요 방지, 도서관 서비스 수준 제고, 운영비 절감 효과 예상(건립타당성 평가 대상 도서관은 향후 공공도서관 운영 컨설팅 사업을 통해 지속적 관리 추진)
제34조(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34조(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②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제34조(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②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구분	개정안 조문	검토 의견	이유
주 변 경	3.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③ 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도서관자료의 수집과 제작, 정리·보존, 이용서비스 제공 2.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특수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③ 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삭 제〉 1.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특수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장애인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TF안 제4조 제2항 다목 참조)
제35조(등록 등)			
설 립 주 체 와 등 록 주 체 통 일	제35조(등록 등) ①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등록 등) ①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교육청 소속 공립 도서관은 관할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고, 사립 도서관의 경우 임의규정(등록 할 수 있다)으로 수정 *『박물관·미술관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변경등록은 안 제35조 제2항 후단으로 이동
등 록 변 경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등록은 제외 필요
등 록 예 외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TF의견)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이외 등록제 반대 * 공공도서관(안 제4조제2항제1호) : 광역대표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등 포함

구분	개정안 조문	검토 의견	이유
			(사유) (1)현실적으로 등록제 효과성이 미비한 일정규모 이하의 도서관, (2)소속 직원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3)대학 도서관·학교도서관·국회도서관·법원도서관·인권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설치된 도서관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판단 (개선안) 등록대상 제외도서관을 시행령으로 위임 신설
등록 폐관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u>사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u> 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u>사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도교육감을 등록 주체에 포함
주 체 추 가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u>휴관 또는 폐관하고자</u>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u>사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u> 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u>폐관하고자</u>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u>사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일정기간 이하 휴관의 경우, 변경 등록으로 조치 가능(폐관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간·사유 등 포함 변경등록에 반영) 사·도교육감을 폐관 주체에 포함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 서 관 운 영 평 가	<신설>	제35조의2(도서관의 운영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u>사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은 등록된 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u>사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된 도서관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예산 지원 및 포상 등을 규정

구분	개정안 조문	검토 의견	이유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도지사 또는 사군·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도교육감을 등록 취소의 주체에 포함
등록 취소 요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도서관 등록 후 학원(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등록의 취소 규정 마련 필요(지자체 건의 등) 안 제2호를 제3호 이동
	2. 제35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 3호를 제2호로 이동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5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 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신설>	5. 그 밖에 도서관발전을 저해한다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	안 제41조(시정명령) 조문이 안 제36조와 중복되어 통합, 제5항 신설
제38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온라인 자료 교환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도서관 자료 중, 온라인 자료 또한 폐관이 아닌 경우에도 교환 및 이관이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 (대표도서관 등 건의)
기준제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자격의 구분·요건 및 그 양성,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운영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자격의 구분·요건 및 그 양성,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종류별 도서관의 운영기준을 도서관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구분	개정안 조문	검토 의견	이유
정 주 체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각급 행정기관의 훈령 및 예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서의 배치기준 및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류별 도서관 기준(시설·자료·인력)은 소관부처 중심으로 법령의 제·개정 필요 『대학도서관법진흥법』(교육부), 『학교도서관법진흥법』(교육부),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국방부) 개정 <병원도서관(복지부), <교정시설도서관>(법무부) 기준 제정
제8장 보칙			
제41조(시정명령)			
삭 제	제41조(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35조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의 시설 및 관리·운영이 이법을 위반하거나 도서관발전을 저해한다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안 제36조(등록의 취소 등)와 중복되어 통합 *등록한 도서관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중복
	제42조(사용료)	제41조(사용료)	
제43조(보고)			
보 고 주 체	제43조(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보고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도서관의 장,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도서관 또는 관할 등록 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0조(보고)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 황 제 출 요 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도서관 통계 및 시책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기업, 연구·교육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관 도서관 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도서관은 등록과 동시에 관할 등록청에 관리·운영현황 등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동 조항 삭제 필요
보 고 주 체	③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등록이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등록이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교육감을 보고 주체에 포함

구분	개정안 조문	검토 의견	이유
현 황 공 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규 등록 및 변경, 폐관 등 도서관 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등록 도서관의 관 리·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등록도서관 현황의 공개 방법 및 시기 등의 효율적 운영 필요
제44조(청문)			
청 문 주 체	제4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제 3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 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 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 시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에 사업 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도지사 및 시·도교 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 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 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 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이나 사서가 아 니면 도서관 또는 사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TF의견) 정책영역 외 민간자들 성의 침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09년 삭제('88년 신설)된 조항 이나 동 조항은 도서관등록제 등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임. 다시 삭제되지 않 도록 노력해야 함 → '09년 국가청렴위원회 부패취 약분야 제도개선 종합대책의 일환 으로 삭제함
부칙			
제1조(시행일)			
시 행 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6조·제41조·제43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도서관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19.12월 통과된 경우, '23.1월

구분	개정안 조문	검토 의견	이유
		조·제44조의 개정규정 중 도서관의 등록 등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터 시행 - 제35조(등록 등),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제41조(시정명령), 제43조(보고), 제44조(청문)
준비행위	<신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도서관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도서관 등록 등에 필요한 규정 마련 및 현장 안내 등을 위한 준비행위 규정 *’ 23.1월 시행의 경우, 3년 전에는 현장에 안내될 수 있도록 ‘20.1월까지 기준 마련 필요
제2조(국·공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국·공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국·공립 도서관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도서관이나 등록신청 중인 사립 도서관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설>	제4조(사립 도서관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립 도서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도서관법 개정 특별전담반(TF)’ 조문별 검토의견)

지정토론

•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국회 토론회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토론

하 부 용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단장

이 용 훈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박 소 희

사단법인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한 혜 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송 승 섭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하 부 용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단장

1. 시작하며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하여 도서관법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
- 도종환 의원에 의하여 발의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도서관 등록제로 규제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임
 -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전문도서관에만 적용하던 것을 국·공·사립 도서관 모두 등록 의무화로 행정청의 도서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등록요건(시설·자료·사서인력)을 갖추고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립 도서관은 시·도에, 사립 도서관은 시·군·구에 등록/ 법 시행 당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국·공립 도서관은 3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도록 경과조치(부칙)
- 등록제는 도서관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시설·장서 및 사서 등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도서관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함

2. 도서관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 검토 사항

2.1 도서관 등록요건의 마련 시 유의 사항

- 현행법상 종류별 도서관 기준(시설·자료·사서인력 등)을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의 제·개정 없이 도서관 등록요건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할지, 도서관 설립·운영을 위하

여 기본적인 도서관 시설·장서 및 사서 등을 갖추어야하나 모두가 공감하는 ‘기본적’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지 등 검토 필요

-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8.12월)에 따르면 도서관 등록 요건은 사서, 도서관자료, 시설이므로 이를 충족해야 하며, 등록은 개관직후에 대개 이루어지므로 도서관 운영의 적정기준이 아니라 최소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개정안 제35조(도서관 등록 및 등록의 취소)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17.9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도서관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시설·장서 및 사서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여 도서관이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바,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하고 있음
-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문에 따르면 입법학상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성 판단 등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등록기준을 구체적·일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요건의 구비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결국 어떤 도서관 등록요건이 제시되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른 호불호나 유불리가 상존할 것이므로, 등록요건이 법적 기준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와 지자체, 도서관계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 우리 부는 도서관 등록요건 마련을 위해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과 합의 도출, 국회와 법제처·행안부와 의 전략적 접근 등으로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도서관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

2.2 도서관 평가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도서관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청이 등록도서관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도서관법 개정 특별전담반(TF) 검토안 : 제35조의2(도서관 운영평가) 신설)
- 아울러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계류 중인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손혜원 의원발의, ‘18.11.16) 통과 대비,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협의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등을 도서관 등록요건과 병행 검토가 필요함

- 도서관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주요내용) 건립사업의 사전 법적 절차(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부지확보, 지방의회 보고(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등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사전 요인을 점검한 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기대효과) 선 시설 건립, 후 운영방안 마련과 같은 방식을 탈피함으로써 향후 시설 리모델링 등 추가 예산 소요 방지, 도서관 서비스 수준 제고, 운영비 절감 효과 예상(건립타당성 평가 대상도서관은 향후 공공도서관 운영 컨설팅 사업을 통해 지속적 관리 추진 등)
- 결론적으로 도서관 건립 사전평가-도서관 등록-도서관 운영평가-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지원 등의 정책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함
- 우리 부는 도서관 평가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

3. 맺음말

-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법』 전부개정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공감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도서관 등록제라는 제도적 틀을 통해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 기능 및 역할 강화로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확대될 것을 기대
- 우리 부는 도서관 등록요건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도서관 등록 등에 필요한 규정을 현장과 함께 마련할 것이며, 등록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할 것임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이 용 훈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1. 들어가면서

앞서 발표하신 두 분의 발제 내용에 따르면 “특별전담반 활동을 토대로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종류별 도서관의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결과(부록 참조)를 수정 의견과 조문의 신설/삭제의견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TF 공공도서관분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도서관의 구분)에서 특화도서관이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된 것이나, 광역대표도서관이 공공도서관범주에서 분리되지 않은 것. (적용 범위)의 도서관 명칭 문제, (등록)에 있어서 등록처 문제, 부칙의 시행시기(3년 후 시행) 등 이다. 이는 공공 도서관의 설립·운영 주체가 지자체와 교육청, 위탁과 직영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고, 작은도서관·광역대표도서관 등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등 공공도서관분과 내에서도 중국적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점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도서관분과의 입장이다.

2. 등록제에 관한 사항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TF 공공도서관 분과에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었다. 그런 중에 “공공도서관 범주에서 특화도서관 삭제와 광역대표도서관의 분리, 공립 공공도서관에 한해 등록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으나, 구체적으로 3년 후 시행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어디에 등록할 것인가는 결국 합의하지 못했고, 특히 건립심사부터 평가까지 시스템적 관리라는 애초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현재 등록받는 곳이 여러 곳으로 분산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즉 등록제 경우에는 등록의 대상과 등록처, 등록기준,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과 이견이 있어 ‘공립 공공도서관에 한해 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TF 검토의견 확정 등 전체회의(5.31)를 통해 다음과

같이 등록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 개정안은 모든 도서관에 대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1)현실적으로 등록제 효과성이 미비한 일정규모 이하의 도서관, (2)소속 직원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3)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국회도서관·병원도서관·인권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설치된 도서관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판단, **공립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은 임의규정)과 장애인도서관만 등록을 의무화**
- 등록된 도서관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예산 지원과 포상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안 제35조의2 (도서관의 운영평가 신설))
- **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부칙 제1조(시행일) 수정/ '19.12월에 통과된 경우, '23년.1월부터 시행)
- **도서관 등록 등에 필요한 규정 마련 및 현장 안내 등 문체부장관의 준비행위 규정**(부칙 안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신설)/ '23.1월 시행의 경우, 3년 전에는 도서관현장에 안내될 수 있도록 '20.1월까지 기준마련 필요

종류별 도서관 모두를 위한 큰 틀에서의 합의라고 심분 이해하더라도 타 분과와는 다르게 다양한 도서관정책 환경에 직면해있는 공공도서관분과의 경우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3. 추가 검토 필요 사항

TF와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는데 등록제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다. 면밀히 검토해 봤을 때 등록의 기준이 되는 시설과 자료, 사서 배치기준 등의 실효성을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고 그래서 도서관 확충이나 투자가 오히려 위축되는 빌미가 되어 등록제가 도서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도 소중하다. 따라서 등록제를 도입할 때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기준 마련이 절대 필요하다.

등록제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장 시행하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도서관은 3년 이내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과 등록제 도입 절차 마련 등의 이유로 3년경과 후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4. 마무리

등록제 도입과 관련해서 등록의 범위를 일부 도서관(공립 공공도서관과 장애인 도서관 등)으로 제한하고 그 절차 등에 대해서도 개정안과는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이번 등록제 도입은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¹⁾이나 김종천 연구위원 의견²⁾과 같이 도서관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서관 등록은 그 목적이 「도서관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법 개정안 제2조3)에 새로 명시한 기본이념, 즉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해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고 최상의 도서관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서관서비스 제공의 직접적 책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하게 자신의 책무를 하도록 등록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제는 궁극적으로 국민/시민의 지지로 실효성을 완성할 것이라고 믿는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시민의 힘과 지지를 믿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다. 새로운 상상과 용기를 가지고 새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
- 1) 개정안은 그간 사립 도서관에 대해서만 등록 규정을 두던 것을 국립 도서관 및 공립 도서관에까지 확대하여 등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도서관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시설·장서 및 사서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여 도서관이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바,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2) 「도서관법」 개정(안)은 사립 도서관에 대하여만 등록규정을 두고 있던 것을 국립 도서관, 공립 도서관에까지 확대하여 등록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러한 도서관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시설, 장서 및 사서 등을 갖추어 등록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의 제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확산이라는 공적인 가치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판단됨
 - 3)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박 소 희

사단법인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1.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갖는 의미

2017년 2월7일 발의 되어 문체소위에 계류 중인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3년이 지난 2019년 현 시점에서 다시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자세한 내용을 준비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2019년 4월~6월 특별전담반 TF를 구성하고 논의된 내용이 도서관 관계자들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설명되어지고 논의되어졌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관공의 도서관을 재정비하는데 힘을 싣고자 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일관된 체계를 갖고 안정적인 운영을 갖추어 도서관 서비스가 대상 이용자에게 최선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도서관이 명실상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의 가장 효과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함이며 이에 정부에서도 힘을 실을 수 있는 도서관 관련 모법의 정비이기에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며, 향후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현실을 담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내용을 성실히 담아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민주적인 의사 결정의 구조나 아래로부터(현장의 소리)의 의견을 담아내려는 준비 과정이 부진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 - 작은도서관 관련

1) 작은도서관 정의와 관련된 의견

제4조 도서관의 구분 제2항 - 1. 공공도서관 나.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2009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해 작은도서관은 처음으로 명명되기 시작했으며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어 정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¹⁾과 같이 주민의 참여로 지역 사회의 생활적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작은도서관의 ‘작은’이 갖는 의미가 다만 법에서 이야기한 시설 규정만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접근이 용이한 생활친화적인 소규모 독서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도서관과의 시설과 장서 등의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음은 현실적인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상향된 기준²⁾이 필요하다는 점이 작은도서관의 공통적 의견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형성과정은 공공도서관의 수가 부족한 현실 등이 반영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민간 주도로 많이 형성되어 그 수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2018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 법적 기준에 부합된 작은도서관의 수는 6,330개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문턱을 낮추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작은도서관이 설치 운영되려고 하는 노력은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도 유효시설의 이용에 가장 우선 순위를 작은도서관 조성에 두었습니다. 더불어 전문 인력의 투입으로 부실한 작은도서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순회사서 지원사업이나 공공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내용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실시와 문화가 있는 날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문화활동의 기획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책친구등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등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즉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가장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는 공공도서관과의 차별화가 아니라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책과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예산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 구성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의 기준점을 명시하지 않고 검토의견과 같이 목적성만을 강조했을 때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도서관의 성격으로 보여지지 않는 유사시설의 혼재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며,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북카페, 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생활문화센터등 작은도서관 공간을 통해 덧붙여지는 기능들은 도서관의 원기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기에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검토의견에서 자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문구 삽입의 결과 공립작은도서관에도 전문적인 인력 배치 없이 주민 참여형이라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제시한 데로 정의되어 지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라 보여집니다.

-
- 1)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 2) 현재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문고(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때부터 적용된 설치기준으로 작은도서관의 현재 상황을 반영한 상향된 등록기준의 마련을 통해 작은도서관 질적 개선과 운영 활성화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2)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작은도서관의 시설·자료·사서배치 기준을 이동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몇 가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공립작은도서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공립작은도서관은 현재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에 1,433개관이 존재하며 그 중 982개관(68.5%)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451개관(31.5%)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공립작은도서관의 위상이 공공도서관과 함께 관리·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립작은도서관도 등록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속에서 고민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둘째, 2012년에 제정된 작은도서관진흥법은 작은도서관의 구성과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별도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 이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등이 만들어졌고 해마다 운영실태등이 조사되어 현실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안에서 작은도서관만이 특별히 작은도서관진흥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특수목적의 도서관들도 각계의 법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진흥법이 별개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작은도서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지도 않기에 강화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셋째,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의 준비과정에서도 드러난 문제이지만 공공도서관의 등록에 따른 기준 마련에 앞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도서관법 하위법령안에 다 담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법을 별도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공도서관법이 별도로 추진될 상황이라면 작은도서관진흥법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작은도서관계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작은도서관 관련법 검토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 주체별 변화 추이를 3년간의 실태³⁾로 살펴보면 가장 큰 수적 확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아파트 작은도서관입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55조2에 근거하여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로 의무적으로 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작은도서관의 공간 확보적 측면에서 활성화하기에 가장 용이한 점이 아파트

3) 2016년 1,450개, 2017년 1,560개, 2018년 1,727개로 전체 사립작은도서관에서 32.1%, 33.6%, 3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으로 확보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은 도서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면적 33제곱미터이상, 장서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입니다. 그러나 운영에 대한 규정이 도서관법에 별도로 없기에 설치 기준만을 가지고 등록한 이후에 운영자를 구하지 못하고 폐관하는 등의 사례 또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아파트 작은도서관입니다. 따라서 9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와 관련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55조2항에 대한 향후 존속 문제는 관련 부처와의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첨) 2018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관련 참고 내용.

2018 작은도서관 평균 예산 현황				도서관수			지원받는 도서관수				평균면적		평균 장서	
	지역	공립	사립	도서관수	공립	사립	공립	%	사립	%	공립	사립	공립	사립
1	서울	22,027,624	10,495,588	981	423	558	344	81.3	288	51.6	105	104	9,407	5,634
2	부산	25,984,249	9,915,525	370	78	292	57	73.1	191	65.4	134	99	8,260	4,851
3	대구	38,492,069	8,582,675	208	59	149	46	78	88	59.1	135	94	10,030	5,925
4	인천	15,135,859	10,283,103	255	55	200	36	65.5	123	61.5	146	108	9,768	5,335
5	광주	11,414,908	3,925,903	393	55	338	43	78.2	129	38.2	112	90	6,054	3,918
6	대전	9,348,198	6,990,195	218	43	175	32	74.4	118	67.4	130	103	7,052	5,329
7	울산	29,294,575	7,118,585	158	37	121	28	75.7	83	68.6	120	104	9,951	5,451
8	세종	69,426,506	8,259,465	56	5	51	5	100	23	45.1	280	153	8,262	4,311
9	경기도	47,274,964	7,749,112	1,536	230	1,306	172	75	712	54.5	151	104	11,811	5,753
10	강원도	42,109,316	4,969,750	197	35	162	17	48.6	72	44.4	217	108	10,506	4,319
11	충청북도	24,515,078	8,470,770	234	13	221	10	76.9	108	48.9	150	106	10,787	4,493
12	충청남도	31,574,585	4,912,914	325	63	262	37	58.7	125	50	122	99	8,365	3,984
13	전라북도	30,405,052	3,620,106	286	129	157	100	77.5	49	31.2	178	105	9,432	4,658
14	전라남도	28,424,424	6,114,359	286	41	245	37	90.2	138	56.3	138	101	6,180	4,622
15	경상북도	26,069,435	3,672,931	260	90	170	68	75.6	58	34.1	146	105	7,923	5,092
16	경상남도	41,259,312	9,330,589	424	72	352	36	50	206	58.5	176	102	11,978	5,932
17	제주	45,700,008	8,643,192	143	5	138	5	100	40	29	226	110	8,642	4,212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한 혜 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1. 시작하며

1963년 ‘국민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내외 도서자료를 수집, 보존, 활용하기 위한 도서관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최초로 「도서관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후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 요구에 따른 도서관 정책을 반영하여 1991년 「도서관진흥법」과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다. 2006년에는 도서관을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2007년 현행 「도서관법」시행 이후, 2008년 「학교도서관진흥법」과 2015년 「대학도서관진흥법」등 관종별로 개별법이 제정·시행되었다.

2017년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5477, 도종환]은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도서관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발의되었다. 도서관 기능 및 역할 강화로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조문 내용 및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마련되었다.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을 설립주체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의
-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강화
- 국·공·사립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 등록 의무화
 - * 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등록 요건 구비
- 도서관 운영현황 보고
- 도서관의 날(매년 4월12일) 등

도서관법 개정 특별전담반(TF)(2019년 4~6월 운영)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분과는 분과별로 회의를 거쳐, 전부개정안의 제4조(도서관의 구분), 제35조(등록 등),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제38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제41조(시정명령), 제43조(보고), 부칙 제2조(국공립도서관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하였다.²⁾ 특히 도서관 등록 의무화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별법과의 체계 방안을 제시하여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1)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2019.4.19. 『도서관법 개정 특별전담반(T/F) 1차 전체회의 자료』.

2)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2019.5.31. 『도서관법 개정 특별전담반(T/F) 2차 전체회의』

2. 대학/학교 도서관 분과의 검토 의견

(1) 도서관의 구분 [안 제4조]

- 현행 도서관법 제2조(정의)에서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 구분하고 있던 것을 발의된 전부개정안에서는 제3조(정의)로 변경하고 제4조(도서관의 구분)를 신설하였다. 전부개정안 제4조 제1항에서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제2항에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도서관의 종류를 설립 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앞서 두 분의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이 있겠으나 실제 현행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대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대학)도서관을 종류에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 입법례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제1항에서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사립 박물관, 그리고 대학 박물관으로 규정한다. 미술관의 경우도 제2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대학 미술관을 구분하여 규정한다. 다른 입법례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제1호의 각 ‘목’에서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그리고 학교수목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학교도서관은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공·사립 구분 없이 각 시·도교육감의 지도·감독 대상이 된다. 국·공·사립 구분이 아닌 학교도서관을 별도 개념으로 정립하여, 설립·운영과 이에 따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 지난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안 제4조 제1항에 도서관의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서 제4호 ‘대학도서관’ 및 제5호 ‘학교도서관’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제2조 제2호에는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부개정안 제4조 제1항에 그대로 인용하여 법령 간 개념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도서관 구분(안 제4조)에 대한 대학·학교 도서관 분과 검토 의견

구분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대학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검토 의견
도서관의 구분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의) 2. "대학도서관"이란 대학에서 교수,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안 제4조 제1항 제4호 대학도서관' 및 제5호 학교도서관'을 구분하여 추가

(2) 도서관의 등록 [안 제35조] 및 보고 [안 제43조]

-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기본시설3)'로 교육·연구 활동에 적합하게 갖추어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모체 기관인 대학은 설립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교사(校舍)4)'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기본 시설이며,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시설 및 인력 요건 등에 대해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
-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모체 기관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됨에 따라, 전부개정안에서 설립 주체에 따라 등록 발급기관을 구분하고 지자체장의 등록 시설로 규제·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설립 및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교육통계 조사 및 정보공시 제도 등을 통해 관련 부처에 보고하고 있다. 전부개정안 제43조에 의거한 보고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의 우려 사항을 고려하여 단서 신설을 통해 전부개정안 적용의 예외 대상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3) 2003년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8301호]의 제4조(교사)[별표 2]의 교사시설의 구분에서 도서관을 기존의 지원시설에서 교육기본시설로 규정함

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교사) ①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의2(복합시설)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국·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표 2〉 등록(안 제35조) 및 보고(안 제43조)에 대한 대학·학교 도서관 분과 검토 의견

구분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대학도서관 관련 법령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	검토 의견
등록	제35조(등록 등)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고등교육법』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③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제1항, 제4조(교사)제1항 및 제2항	※『초·중등교육법』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③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교사)	-모체기관(대학 혹은 학교)의 설립, 설립인가기준등에 관한 관련 법령에 따름
보고	제43조(보고)	※『고등교육법』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대학도서관진흥법』제15조(실태조사)①~②	※『초·중등교육법』제11조(교육통계조사 등)	-모체기관(대학 혹은 학교)의 현황보고와 관련된 법령에 따름

(3) 도서관 인력·시설 등 [안 제38조]

- 도서관 등록제 요건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 사서배치 등 기준에 관한 법령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전부개정안 적용의 예외 대상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대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사서 등)와 제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사서 등) 및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에 규정되어 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및 제13조(시설·자료 등)와 동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 및 제8조(시설·자료의 기준 등)에서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표 3〉 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안 제38조)에 대한 대학·학교 도서관 분과 검토 의견

구 분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대학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검토 의견
도서관 인력· 시설 등	제38조(도서관 인 력·시설 및 도서 관자료 등)	제11조(사서 등) ③제 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 치기준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범위에서 학칙 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 및 도서 관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 관자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 교사· 살교사나 사서 (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둔다 제13조(시설·자료 등) ①학교 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요구에 적합한 시설·자 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 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 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자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폐기·제적의 기준과 범 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도서관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법령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전부개 정안 적용의 예외 대상으로 명시

(4) 적용범위 [안 제8조]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9조]

- 학교도서관 분과에서는 전부개정안 제8조(적용범위)에서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도서실은 제35조, 제36조, 제41조 및 제43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보충적 규정을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 대학도서관 분과는 전부개정안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보충적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는 도서관 등록제와 관련된 전부개정안 제35조(등록 등), 제36조(등록 취소 등), 제38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41조(시정명령), 제43조(보고)의 각 조항별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보충적 규정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검토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적용 범위(안 제8조)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9조)에 대한 대학·학교 도서관 분과 검토 의견

구분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도서관법 TF 검토 의견	비고	
적용 범위	제8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u>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도서관은 제35조, 제36조, 제41조 및 제43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u>	학교 도서관 분과 제안	※보충적 규정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필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u>	대학 도서관 분과 제안	

3. 마치며

지금까지 전부개정안의 도서관 등록 의무화 등과 관련한 조문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특히 「도서관법」 전부개정안과 타 법률들 간에 상충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서관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한 그간의 활동과 오늘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되고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으로 모두 함께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감사합니다.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송 승 섭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앞서 발제하신 김종석 연구위원님과 송기호교수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지난 4월 19일에 열린 『도서관법 개정 TF』를 시작으로 5월 31일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 등 2개월에 걸쳐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사안별로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조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관종별로 분야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통의 장이 계속된다면 도서관계 전체를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 전문·특수도서관분과는 장애인도서관, 전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정시설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도서관은 각기 다른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는 분야라 제 능력으로 이들 도서관의 구체적인 문제와 요구사항을 모두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단지 관련 기관들의 생각을 모으고 조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도서관의 예를 들자면,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한국농아인협회 등의 의견 조정이 필요해 관련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제출토록 했고, 다른 전문도서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 관해서도 전문·특수도서관 분과의 모든 협의회에 발제문을 전달하고 의견을 주신 곳에 대해서만, 토론 의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토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1.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전문도서관 관련 의견

1.1 기타 공공기관이 설립한 전문도서관의 설립 주체 문제는 입법 미비

도종환 의원안 + TF 검토안	전문도서관 의견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구분 ... 1. 국립 도서관: 국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 3. 사립 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2019년 기준 339개 공공기관은 법률로 규정한 공공기관이고, 이들이 설립한 전문도서관과 소속 기관 직원은 비공무원임에도 대부분의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법률로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을 부여했음에도 이들이 설립한 도서관을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함은 비현실적 규정이 전문도서관에만 발생함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에 어긋나 국민 인식과 배치됨은 물론 입법 미비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1.2 전문도서관과 관련된 기타 경미한 보완 및 재검토 의견

도종환 의원안 + TF 검토안	전문도서관 의견
제4조(도서관의 구분) 라. 지역별·분야별 콘텐츠를 개발 및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공중의 특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화도서관	특화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신동근(민) 발의 부분의 콘텐츠 특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은 공공도서관의 당연한 역할이자 핵심적 기능이므로 공공도서관의 하나로 새로 나열하는 것은 과다입법으로 판단되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35조(등록 등) ①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 도서관 등록 의무제는 효과가 미비한 일정규모 이하나 소속 직원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공공도서관 외 다른 도서관은 등록이 임의규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전문도서관의 주무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행정 체계에 따라 다양해 등록제가 시행되면,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된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 기업체 등 대부분의 사립 전문도서관은 계속 미등록할 것이므로 미등록 도서관의 법률적·정책적 지위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
제30조의2(도서관의 운영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등록된 도서관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 공개, 예산 지원, 포상을 신설하는 토론 자료 제35조와 제37조의 운영평가 조항은 신설하거나 제10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나 제38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와 연계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조항대로 시행되어도 운영평가 주체의 난립이 우려되므로 자구의 정비로 보완해야 한다.

1.3 법률안에 없는 전문도서관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꼭 반영해야

「전문도서관」은 시행령을 통해서 종류와 범주의 재정립, 서비스 대상의 명료화, 국가통계와 운영평가의 연계, 인력·시설·자료 등의 기준 수립, 정부 정책과 역할 강화, 대표전문도서관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도서관의 세부 종류와 범위와 운영 방안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법률안 개정 즉시 이를 꼭 실행에 옮겨야만 전문도서관의 발전이 시작되어 법률안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

2.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장애인도서관 관련 의견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방향성이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장애인도서관’에서는 매우 반갑고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방향성에 반해 조항 하나하나에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기대에 반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게 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특성과 접근 방식의 다양성(맞춤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도서관’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정시설도서관과 등과 같은 특수도서관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서비스해야 한다. 특수도서관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은 특수한 환경에 처한 대상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조건에 따른 특수한 서비스와 접근방법이 요구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특수도서관과는 다르다. 또한, 장애인을 공공 영역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속한 사람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윤리적·위험적인 요인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법률인 「점자법」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에서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점자’를 도서관 자료로써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립장애인도서관에게 디지털 파일을 일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의 유지 등도 불합리하므로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는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역할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여러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것들을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3. 전체 의견을 마감하며....

앞서 등록제의 찬성과 위상 강화요구가 강한 장애인도서관협회와 향후 전문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전문도서관협회의 의견을 중점으로 소개하였지만 이 토론문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여러 다른 도서관들도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병영도서관훈령』에 따라 운영 중인 병영도서관과 『교정시설교도대설치법』 및 『법무시설규칙』에 따라 설치된 교정시설도서관이 있고, 보건복지부의 영향 하에 있는 의학도서관과 병원도서관 등 다루어야 할 전문도서관이 많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도서관은 없습니다만, 이번 토론회는 ‘도서관 등록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회에 이러한 도서관들의 발전을 위한 법령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